

KERI Zoom-In

Free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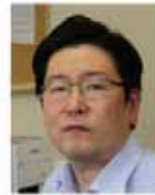
Free Enterprise

Free Competition

G20 정상회담 관련 예상 의제와 대응방안



조경명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glcho@keri.org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
wsong@keri.org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psr@keri.org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lktlee@keri.org

1. 기본방향

- 2009년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의 지속적 추진과 보완방안 제시
 - 새로운 의제보다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세계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제를 마무리하는 장으로 활용
- G20 의장국으로서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의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의제 또는 국가 간 의견차이로 합의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의제는 설정을 자제하거나 논의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친 금융규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 지나친 기업의 사회적 책임요구 등은 궁극적으로 민

간의 역할을 억제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은행세 도입,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 등은 국가 간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의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2. 부문별 아젠다

가. 금융부문

- G20 Agenda
 - 건진성 규제(BCBS Proposals)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선
- 보상체계 개선
- 회계제도 개선
-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 강화
- 신용평가사 규제강화
- 국제기준 이행강화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출구전략
-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체계 논의
-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 구축
- 은행세 도입

□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 G20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의제 외에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 또는 재계의 시각에서 볼 때 G20 정상회담 의제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Business Summit에서 논의되어야 함.
- 은행건전성 규제 강화는 금융중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사전적(事前的)인 과잉규제 도입은 은행의 영업활동과 규모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비판적인 검토가 요구됨.
- 주요국의 정부부채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부채 축소를 위한 논의 필요

나. 무역 및 투자

□ G20 Agenda

- DDA 협상 타결의 이니셔티브 확보
-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무역 활성화 방안
- 투자 활성화 방안
- 환경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방안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

- 개발 격차 해소 방안

□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 무역·투자부문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무역·투자의 회복세 지속 방안과 보호무역 배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보호무역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DDA 협상 타결의 이니셔티브가 G20 회의에서 확보되어야 함.
- 위안화의 인위적 절상과 같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함.

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 G20 Agenda

- Post-2012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 개도국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및 기술지원 방안
-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 구체화 방안
-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합의문을 도출할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감축목표가 강화되거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의 분담이 높아질 위험성도 존재함.
-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온실가스 감축관련 의제보다는 녹색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거래 활성화 방안 등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G20 Agenda

- 국제표준 ISO26000 가이드라인에서 인권, 노동개선, 환경, 공정한 조직운영, 소비자 이익실현, 지역사회개발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제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G8 정상회의 등에서 사회적 책임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음.
- 이번 G20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제는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보다 시급한 다른 사안에 묻힐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촉진하고, 모든 나라의 기업들에 의해 타당한 국제적 수단과 표준 및 원칙이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도 있으나 아직은 국제표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의 내용이 기업활동에 부담
- 따라서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계적 논의의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하지만 앞서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임.

I. 금융부문

1. 배경

- 2008년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어 BIS, FSB, IMF 등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금융규제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은 관계로 G20 각국의 실무 관계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금융규제의 개혁방향에 대한 윤곽은 이미 드러난 상태임.
- G20 정상회담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는 많지 않음.

- G20 정상회담과 더불어 열리는 G20 비즈니스회담에서는 G20 정상회담의 의제 이외에 재계의 시각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G20 예상 의제

□ 건전성 규제(BCBS Proposals)

- G20의 요청으로 은행 건전성 규제강화 방안을 연구해 온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2009년 12월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의견수렴 중

표 1. BCBS 건전성 규제강화 방안

개혁 방안	내용
은행자본의 질 제고	- Tier1 자본을 보통주(common shares)와 내부유보(retained earnings)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Tier3 자본은 폐지 - 기존에 BIS비율 산출 시 포함되던 하이브리드채권이나 후순위채권 등과 같이 부채 성격을 가지는 상품의 자기자본 인정을 엄격히 제한하여 자본의 손실 흡수력 제고
은행자본의 리스크 범위 확대	- 파생상품, RP 거래, 유동화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으로 중앙청산소(CCP)로 거래 이전 유도
레버리지 비율 도입	- 현행 바젤II(risk-based 자본규제)의 보완수단으로 회계상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자산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 규제를 도입
경기 순응성 완화	-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 적립 - 실제 발생손실(incurring loss)이 아닌 예상손실(expected loss)에 근거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호경기에 대손충당금이 많이 쌓이도록 유도
유동성 규제 도입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위기 시 은행의 유동자산이 30일간의 순현금유출(net cash outflows)보다 많을 것을 요구 - 순안정 펀딩 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은행의 자산부채 구조의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채규모를 충족 할 수 있는 장기의 안정적 자산을 보유토록 규제

- BCBS의 규제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은행자본의 질 제고(raising the quality of bank capital)
 - 은행자본의 리스크 범위 확대(enhancing risk coverage of bank capital)
 - 레버리지 비율 도입(introducing a leverage ratio)
 - 경기 순응성 완화(promoting counter-cyclical buffers)
 - 유동성 규제 도입(introducing global liquidity standards)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 FSB는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ignificant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이 야기하는 '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2010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
- FSB의 대응방안은 SIFIs의 파산 가능성 및 영향 축소, 파산 금융기관의 정리절차 개선, 핵심 금융하부구조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선

- 각국별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 Over-the-counter derivatives)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표준화 노력 진행
- 각국의 규제당국으로 구성된 OTC Derivatives Regulators Forum이 2009년 9월에 설립되어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 및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ies)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 중

□ 보상체계 개선

- G20의 요청에 따라 FSB는 리스크를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2009. 4. 2)'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2010년 3월까지 점검할 예정임.

-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은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리스크를 감안한 보상체계 구축
 - 보상정책에 대한 공시 강화
 -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구성
 - 감독당국의 보상체계 감독 강화

□ 회계제도 개선

-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요청으로 양대 회계제정기구(IASB, FASB) 간 국제적 단일 회계기준에 대한 합의를 2011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 강화

-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이 야기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해 본국 및 주재국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이 설립되어 운영 중
- FSB, BCBS, IOSCO 등은 공동감시단 운영의 모범규범(best practice)을 제정하고 이의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

□ 신용평가사 규제강화

- G20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금융기관 수준의 영업규범을 요구
- G20 정상회의에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천명한 뒤 각국에서는 신용평가기관 규제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은 각국의 신용평가기관 규제를 평가하여 국가 간 규제의 격차를 국제표준(best practices)을 제시하는 노력을 진행 중

□ 국제기준 이행강화

- 조세피난처, 자금세탁 지역으로의 국제자본 이동 증가가 국제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금융규제가 각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

- FSB를 중심으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선별하고 이들로 하여금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 중
- FSB는 금융 관련 국제기준의 국가별 일관된 이행을 위해 FSB 회원국 간 상호평가를 실시할 예정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IMF 및 World Bank와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MDBs)에 대한 개혁 작업의 지속 필요
-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하고 각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는 쿼터배분을 통해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

□ 출구전략

- 2009년 11월 St. Andrews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국제협력, 신뢰성, 유연성에 바탕을 둔 출구전략을 개발하기로 합의
- IMF에 따르면 출구전략을 위한 국제협력은 정책의 동시성(synchronization)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각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한다는 의미를 가짐.

□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체계 논의

-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경제의 장기적이며 균형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체계인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를 구축하기로 합의
- 이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경제정책을 상호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마련할 예정

□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 구축

- 갑작스러운 자본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각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외환보유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
- 거론되는 금융안전망으로 ①multilateral insurance arrangements 도입, ②IMF 대출제도의 개선, ③ regional and bilateral arrangements의 확대 등이 있으며 아직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 은행세 도입

-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묻고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한 자금조성을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부채 또는 이익 및 보너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
- IMF는 은행세의 형태로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에 부과되는 금융안정분담금(FSC: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과 은행권의 순익과 보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활동세(FAT: Financial Activities Tax)를 제안
- 은행세에 대해서는 국가 간 견해 차이가 크므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도입을 지지하지만 그 외 국가들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도입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며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2010년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

3.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 G20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의제 외에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 또는 재계의 시각에서 볼 때 G20 정상회담 의제 논의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Business Summit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임.

□ 금융중개 기능 위축 방지

-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강화는 은행의 무모한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강한 규제로 인해 실물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당히 위축된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부분임.
- BCBS의 건전성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규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즉 이익(benefit)과 비용(cost)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
- 향후 건전성 규제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규제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예상되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위축을 어떻게 완화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건전성 규제개혁 방안이 최종화(finalize)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주어져야 할 것임.

□ 사전적(事前的)인 과잉규제 도입 방지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볼커 룰(Volcker Rule)',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은행세 등은 사전적(事前的) 과잉규제의 성격이 짙음.
- 사전적(事前的)인 과잉규제는 은행의 영업활동과 규모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필요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되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과잉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

□ 재정건전성 회복

-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정부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일부 국가의 경우 디폴트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

- 정부부채의 축소를 위한 논의는 하루 빨리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각국의 여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달리할 수 있을 것임.

II. 무역 및 투자

1.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과 더불어 국제무역 및 투자가 급감하였고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급감과 무역금융의 축소에 기인,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보호무역 경향도 일부 나타남.
- 2008년 G20 정상회의의 출범과 함께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과 보호무역 조치 방지를 위한 방안이 제시·시행됨.
- 최근 경기회복과 더불어 무역·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무역·투자 활성화 및 보호무역 방지는 여전히 필요한 과제
- 글로벌 불균형 및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 선·후진국 간의 개발 격차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함.
-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는 무역·투자 활성화, 보호무역의 방지와 더불어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및 국제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2. G20 예상 의제

□ DDA 협상 타결의 이니셔티브 확보

- DDA 협상은 WTO 출범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는 무역·투자 장벽의 제거를 통해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속히 타결되어야 함.

- 장기간의 협상 타결 지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발전을 거듭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신뢰 하락 및 무력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 최근의 보호무역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을 회피하면서 행해지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므로 보호무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대폭 완화가 예상되는 DDA의 조속한 타결 필요

□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 증가

- 워싱턴 및 런던에서의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무역·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배격(stand-still 원칙) 및 이에 대한 WTO의 분기별 점검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 무역 활성화 방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국제무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수요의 회복이 아닌 주요국들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효과에 기인하므로 회복세 지속을 위한 무역 활성화 방안 필요

□ 투자 활성화 방안

- 투자 회복세의 지속을 위해 투자 흐름의 원활화 방안 및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개선,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필요

□ 환경 상품 및 서비스(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교역 활성화 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환경 상품 및 서비스(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에 대한 수요 증대 전망

- 환경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제도개선 및 표준화

등과 더불어 교역장벽 완화 등 교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 필요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

-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지속은 저축·투자에 있어서의 왜곡 및 그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나타냄.

-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

- 금융위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때마다 신흥경제(emerging economies)에서의 급속한 자본유출로 인한 달러 유동성 위기 현상이 나타남.

□ 개발격차 해소 방안

- 최빈국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격차 해소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3.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 무역·투자 부문 agenda 설정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원칙은 무역·투자의 회복세 지속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

-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보호무역 배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보호무역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DDA 협상 타결의 이니셔티브가 G20 회의에서 확보되어야 함.

□ DDA 협상 타결의 이니셔티브 확보

- DDA 협상 타결은 다자간 합의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 새로운 다자간 협의체인 G20 체제에서 타결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자유무역을 위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 DDA 이외의 새로운 무역협상 등의 방안도 논의되어야 함.

□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 배경 합의 이후에도 G20 국가들의 합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합의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무역 활성화 방안

- 국제무역의 회복세 지속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투자 활성화 방안

- 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쟁정책 등 국내 정책에 포함된 보호주의적 조치의 완화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여야 함.
- 인위적인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과 같은 단기적 대응은 국제 무역 및 투자의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함.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

- 이와 같은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간 통화스와프 혹은 IMF 역할 확대와 같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개발격차 해소 방안

-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선진국 ODA 확대 및 국제기구의 최빈국 지원체제 구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Ⅲ.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1. 배경

□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로 선언적인 합의에 그칠 전망

-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분야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2009년 G20 정상회담과 같이 선언적인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즉, 선진국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개도국의 참여, 재정 및 기술지원 등 코펜하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용을 멕시코에서 열릴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타결하지는 정도의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선택한 우리 정부는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모색할 가능성도 존재

-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할 경우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가 제안한 『개도국 감축행동등록부』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
- 또한 녹색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2. G20 예상 의제

□ Post-2012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 제15차 당사국 총회는 Post-2012 체제 타결을 목표로 열렸으나 합의에 실패하였음.

- 선진국의 추가 감축, 개도국의 적절한 감축행동 이행, 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국제적 검증, 기술·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Post-2012 체제를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타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개도국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및 기술지원 방안 모색

- 코펜하겐 합의문에서 2012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의 Fast Start Fund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재원마련에 합의
- 개도국들은 기금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지원금액 규모 확대를 요구
- 또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어떻게 마련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

□ 코펜하겐에서 우리가 제안한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 설립

- 미국은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이 검증 가능한 감축행동을 이행하지 않는 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반면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은 구속적 감축이행은 불가능하며 다만 자발적 감축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개도국의 감축행동과 선진국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코펜하겐에서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부 제안이 합의문으로 채택되었음.
- 그러나 등록부의 범위, 법적성격, 등록사항, 기술지원과 감축행동의 연계 등 각국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내용보완이 필요
-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구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역할을

강조할 가능성 높음.

□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각국의 재정 투자 확대 등 국제공조 방안

-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실적에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을 부여하고 국제배출권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허용
- 프로젝트(project) 위주의 현행 청정개발사업(CDM) 제도를 완화하여 감축 프로그램, 정책 및 부문별 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 녹색제품 및 기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공동개발 노력 확대
- 녹색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와 교역 활성화 방안

3.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 경제적 편익과 합의문 도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제 선정

-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의 자발적 감축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음.
-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인도 등이 아직 구체적인 감축행동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은 우리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도국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개도국의 감축행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축목표가 강화되거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의 부담이 높아질 위험성도 존재함.
-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이 동의하는 합의문을 15차에 걸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번 G20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임.

- 따라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의제보다는 녹색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거래 활성화 방안 등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IV.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배경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에 대한 세계적 논의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종전 기업활동의 주요 목적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증진에 주력하는 것이었으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활동은 기업과 주주와 같은 이해당사자 외에도 종업원, 거래자, 소비자, 시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해야만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됨.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기업의 인권, 노동, 환경, 기업활동, 소비자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ISO 26000).
- 향후 ISO 26000은 국제 간 기업활동에 있어서 'CSR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업경쟁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선진국 모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2003년, 2007년, 2008년 G8 선언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이 계속되는 등 세

계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

- 2004년 OECD가 발표한 '기업거버넌스 원칙' 보고서에서도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옴.
- 2010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ance for Social Responsibility)'이 제정됨(ISO26000).
-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차원을 넘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이윤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윤리와 이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정부규제와 함께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과 시장규율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인식 급증

- 한국에서는 2000년대 기업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환경보고서', '사회공헌백서', '윤리경영현장' 등을 제작하여 발표하기 시작함.
- 최근에는 국제협약에 직접 가입하거나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보고서 발간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징적인 윤리강령 혹은 윤리규범의 제정 형태가 일반적임.

2. G20 예상 의제

□ 국제표준으로 정착

- 2009년 ISO26000 가이드라인은 인권(Human rights), 노동개선(Labour Practices), 환경(The environment), 공정한 조직운영(Fair operating practices), 소비자 이익실현(Consumer issues), 지역사회개발(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과 같은 6개 핵심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ISO26000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지구협

약(Global Compact) 등과 이들 주제에 대해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받고 있음.

□ 주요 의제로 제기되기는 시기상조

- 역대 G8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진전시키려는 선언을 반복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글로벌 경제문제, 보다 장기적인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주도적 아젠다로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기업 지배구조를 촉진하고, 모든 나라의 기업들에 의해 타당한 국제적 수단과 표준 및 원칙이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번 G20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제는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보다 시급한 다른 사안에 묻힐 가능성이 큼.

□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

- ISO26000 가이드라인의 규정 범위가 다양한 분

야를 포괄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주요 주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

- 향후 사회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제 간 기업활동에 있어서 'CSR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기업경쟁력의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3.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 한국 기업들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아직 부담스러운 주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도 있으나 아직은 국제표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기업활동에 부담
- 따라서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계적 논의의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앞서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임.

별첨 1. 부문별 아젠다 내용 및 전망

부문	아젠다	주요 내용	전망 및 추진방향
금융부문	은행건전성 규제강화	- 은행자본의 질 제고 - 신용위험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 레버리지 비율 도입 - 경기순응성 완화 - 유동성 규제 도입	G20의 요청으로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2009년 12월 은행의 건전성 규제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각국 및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중이며 2010년 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파산 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파산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만약 파산 시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를 개선하여 파산의 영향력 축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ignificant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이 야기하는 '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2010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선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 Over-the-counter derivatives)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표준화 확대	각국의 규제당국으로 구성된 OTC Derivatives Regulators' Forum이 2009년 9월에 설립되어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 및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ies)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 중
	보상체계 개선	- 리스크를 감당한 보상체계 구축 - 보상정책에 대한 공시 강화 -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구성 - 감독당국의 보상체계 감독 강화	G20의 요청에 따라 FSB는 리스크를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2009. 4. 2)'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회계제도 개선	국제적 단일 회계기준을 제정	G20의 요청으로 양대 회계제정기구(IASB, FASB) 간 국제적 단일 회계기준에 대한 합의를 2011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 강화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이 야기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해 공동감시를 강화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본국 및 주재국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공동감시단 운영의 모범규범(best practice)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
	신용평가사 규제강화	G20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금융기관 수준의 영업규범을 요구	각국은 신용평가기관 규제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각국의 신용평가기관 규제를 평가하여 국가 간 규제의 격차를 국제표준(best practices)으로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 중
	국제기준 이행강화	조세피난처, 자금세탁 지역으로의 국제자본 이동 증가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금융규제가 각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감독 강화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선별하고 이들로 하여금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금융관련 국제기준의 국가별 일관된 이행을 위해 회원국 간 상호평가를 실시할 예정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하고 각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는 쿼터배분을 통하여 지배구조를 개혁	IMF 및 World Bank와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MDBs)에 대한 개혁 작업을 지속하여 2010년 11월까지 개혁 완료 목표
	출구전략	- 공공부문에 의존한 성장이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출구전략에 있어 국제공조 유지 - 출구전략은 개별 국가 사정에 맞게 시행하되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는 유지하되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점진적 출구전략의 시행이 진행될 가능성 증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체계 논의	세계경제의 장기적이며 균형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의 경제정책 수행에 협력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인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경제정책을 상호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 구축	갑작스런 자본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각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외환보유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	거론되는 금융안전망으로 ① multilateral insurance arrangements 도입, ② IMF 대출제도의 개선, ③ regional and bilateral arrangements의 확대 등이 있으며 아직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추후 지속될 예정
	은행세 도입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묻고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한 자금조성을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부채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은행 이익과 보너스에 대해 세금 부과	국가 간 견해 차이로 도입이 소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며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2010년 말까지 결론낼 예정

부문	아젠다	주요 내용	전망 및 추진방향
Business Summit 금융부문	• 금융 중개기능 위축 방지	과도한 은행건전성 규제강화로 인한 급격한 신용 공급 위축 방지	은행건전성 규제강화는 은행의 무모한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강한 규제에 의해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사전적(事前的)인 과잉규제 도입 방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볼커 룰(Volcker Rule)'과 같은 사전적(事前的)인 과잉규제의 국제적 도입 방지	사전적(事前的)인 과잉규제는 은행의 영업활동과 규모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과잉규제의 국제적 도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 필요
	• 재정건전성 회복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주요국의 정부부채의 축소	주요국의 정부부채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일부 국가의 경우 디폴트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부부채의 축소를 위한 조속한 논의 필요
무역 · 투자	• DDA 협상 타결 이니셔티브 확보 방안	WTO 규정 위반을 회피하면서 행해지는 보호무역의 근본적 차단 위한 DDA의 조속한 타결 방안	DDA 협상 타결은 다자간 합의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 새로운 다자간 협의체인 G20 체제에서 타결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
	• 보호무역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방안	워싱턴 및 런던에서의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배경(stand-still 원칙) 합의 및 이에 대한 WTO의 분기별 점검	G20 국가들의 합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합의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무역·투자의 회복세 지속을 위한 무역 활성화 방안 및 투자 흐름의 원활화 방안과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개선, 경영 환경 개선 방안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쟁정책 등에 포함된 보호주의적 조치의 완화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지속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리스크 축소 방안	국제 무역 및 투자의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단기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 필요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	금융위기 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나는 신용 경제에서의 급속한 자본유출로 인한 달러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	다자간 통화스와프 혹은 IMF 역할 확대와 같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개발격차 해소 방안	최빈국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격차 해소 방안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국 ODA 확대 및 국제기구의 최빈국 지원체제 구축 방안 논의 필요
	• Post-2012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1차 공약기간이 끝난 이후의 선진국의 추가감축 목표, 개도국의 참여 등 Post-2012체제 합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합의문 도출	선후진국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합의도출이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선연적 합의문 도출에 그칠 가능성 높음.
기후변화 & 녹색성장	• 개도국 참여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방안	코펜하겐에서 합의한 Fast Start Fund의 구체적 조달 방안, 활용 방안 마련	재원조달 방안이 아젠다로 채택될 경우 우리의 추가적 비용부담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 구체화 방안	선후진국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목적으로 코펜하겐에서 제안한 감축행동 등록부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 설립	개도국의 감축이행은 우리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축 목표나 재정지원 부담이 높아질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크레딧 부여 등 국제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녹색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재정투자 확대, 공동 연구개발 등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여 합의도출이 어려운 의제보다는 녹색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 ISO26000 가이드라인에서 인권(Human rights), 노동개선(Labour Practices), 환경(The environment), 공정한 조직운영(Fair operating practices), 소비자 이익실현(Consumer issues), 지역사회개발(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제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 과거 G8 정상회의 등에서 사회적 책임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G20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제는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보다 시급한 다른 사안에 몰릴 가능성이 큼. 따라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촉진하고, 모든 나라의 기업들에 의해 타당한 국제적 수단과 표준 및 원칙이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도 있으나 아직은 국제표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의 내용이 기업활동에 부담

별첨 2: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

축목표, 탄소세, 에너지 효율기준, 건물단열규정 등 각종 정책과 수단을 포함

1. 제안 배경

□ 개도국의 자발적인 감축행동에 대한 국제적 인정 필요성

- 발리행동계획에 따르면 개도국도 선진국의 기술 및 재원 지원하의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개도국은 여러 가지 자발적 감축행동을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해 줄 방안 부재

□ 개도국의 감축행동과 선진국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

- 주요 개도국도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수용해야 한다는 선진국 입장과 자발적 감축과 선진국의 지원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조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필요

2. 주요 내용

□ 등록범위

- 국가 감축목표와 배출권 거래제, 산업부문별 감

□ 등록의 법적 성격

- 각국의 여건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등록하고 이를 국제적 행동으로 인정

□ 등록사항

-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항은 다음 3가지이지만 이 중 유형 2만 코펜하겐 합의문에 채택되었음.

	유형 1	유형 2	유형 3
측정, 보고, 검증	• 자발적, 일방적 감축행동	•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감축행동	• 탄소 크레딧이 부여되는 감축행동
	• 시행 감축행동을 자발적으로 보고 • 보고용 국제 가이드 라인 개발 가능	• 지원하는 선진국과 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양자적으로 시행	•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다자적으로 시행

3. 향후 과제

□ 보다 다양한 유형의 감축행동이 등록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제적 검증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보완 필요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0년 6월 25일 | 발행인 김영웅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 전화 3771-0001 | 팩스 785-0270~3

